

[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-021호]

2024년 「지역 특화아이템 콘텐츠개발 지원사업」 모집공고

- ❖ ICT/SW, 콘텐츠 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및 지역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의 특화된 소재를 활용한 아이템 기반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지원
- ❖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분야 주요 제품군 대상 ICT기술과의 연계와 융합을 통해 비대면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

2024년 3월 12일

(재)평택산업진흥원장

0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4년도 「지역특화아이템 콘텐츠 개발지원사업」
-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4년 11월 30일
- 주요내용 : 지역 특화아이템 및 지역 산업 콘텐츠개발 지원
- 지원대상 :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기업
 - 사업장 주소지(본사, 등록공장, 연구소 등)가 평택에 소재한 기업
 - ※ 단,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 지원 불가
 - 공고일 기준 업력 1년 이상이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- 지원규모 : 2개사 내외 / 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이내
 - ※ 평가결과에 따라 주관기업 수 및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유형 : 아래 ①, ②유형 중 희망하는 1개 유형 선택

유형	①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	② 지역 전략산업 홍보 콘텐츠 개발						
수행주체 (콘텐츠 소유)	주관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수행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주관기업</td> <td>지역 내 ICT/SW, 콘텐츠 관련 기업</td> </tr> </table>	주관기업	지역 내 ICT/SW, 콘텐츠 관련 기업	주관기업이 참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수행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주관기업</td> <td>지역 내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기업</td> </tr> <tr> <td>참여기업</td> <td>ICT/SW, 콘텐츠 관련 기업(지역 무관)</td> </tr> </table>	주관기업	지역 내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기업	참여기업	ICT/SW, 콘텐츠 관련 기업(지역 무관)
주관기업	지역 내 ICT/SW, 콘텐츠 관련 기업							
주관기업	지역 내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기업							
참여기업	ICT/SW, 콘텐츠 관련 기업(지역 무관)							
지원내용	지역의 특화된 소재를 활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하는 비용 지원	제조업 및 지식서비스기업이 주력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홍보 등으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하는 비용 지원						
예시	예)지역의 콘텐츠 제작·개발 기업이 평택의 특화된 소재(문화, 관광, 전략산업 등)를 활용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	예)평택의 반도체 부품 제조 기업(주관기업)이 콘텐츠 제작 기업(참여기업)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상현실(VR·AR) 홍보 콘텐츠를 개발						

※ 단, 사업기간 내 성과물 제작이 완료되어야 함

02 사업내용

1] 주요내용

○ 지원내용(유형1) :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

- 지역의 문화, 산업, 제품, 유산 등 지역 특화 아이템을 소재로 활용하여 MICE 산업 등 연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

< 지역특화아이템 콘텐츠 개발 예시 >

평택이' 와 함께 떠나는 자연 생태계 탐험		평택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영상 콘텐츠		평택시 평택8경 홍보영상 및 음악	
					
영역	게임	영역	방송	영역	음악
활용기술	메타버스	활용기술	VR	활용기술	드론

※ '22년 지역 특화아이템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성과물 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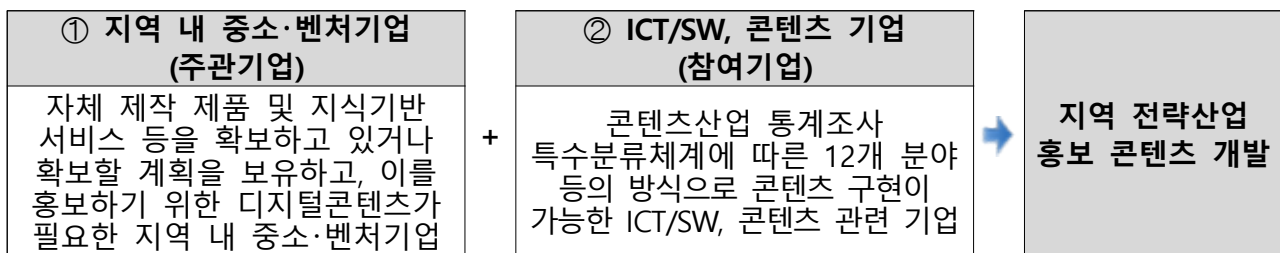
○ 지원내용(유형2) : 지역 전략산업 홍보 콘텐츠 개발

- 제조·지식서비스 기업의 제품(서비스)에 대한 홍보·마케팅 디지털 콘텐츠를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으로 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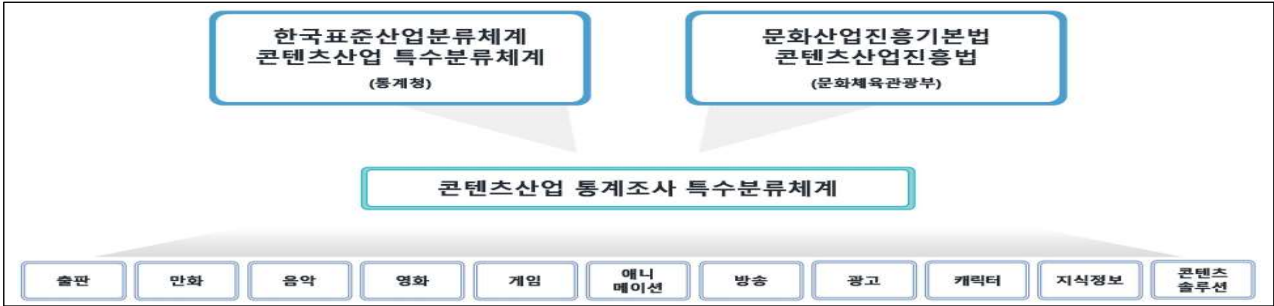
< 지역산업 콘텐츠 개발 예시 >

하나카드		삼성 갤럭시		신한라이프	
					
영역	캐릭터, 애니메이션	영역	광고	영역	영상
활용기술	메타버스	활용기술	디지털사이니지	활용기술	인공지능

< 컨소시엄 구성 방식 >



< 성과물 형식 -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특수분류체계 12개 영역 >



○ 지원내용

- 지역의 특화된 소재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제조업 및 지식 서비스기업이 주력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홍보 등으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○ 사업비 구성

- ①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(단독 수행)

구분		지원내용
인건비	인건비 (현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 사업비의 25% 이상 신청기업 부담(총 사업비의 10% 이상 현금) ※ 인건비는 현물 계상만 가능(현금 계상 불가)하며, 총 사업비의 70% 이내에서 편성 • 인건비 계상방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 인건비 × 참여 기간(개월 수) × 참여율 (ex. 2,000,000원 × 8개월 × 40% = 6,400,000원) • 실 인건비 산정근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인력: 최근 3개월 원천징수 영수부 근거 산정 (관련 자료제출 必)3개월 급여 평균의 30% 이상을 계상할 수 없음 - 신규인력 기업 사규 및 취업규칙, 동일 직급 및 유사업무 인력 인건비 근거 산정(관련 자료제출 필수) - 협약 기간 개월 수 이내의 인건비만 산정 가능 - 통상임금만 계상하며, 유동적·비정기적 임금 계상 불가 - 복리 후생적 성격의 임금 계상 불가
	직접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콘텐츠 제작 및 완성(납품)을 위한 HW, SW 등의 완제품 구매 ※ 범용성 물품 및 사무기기 구매 불가 - 해당 사업수행에 있어 과제 완성에 필요한 재료의 구매 시 인정 - 계획서 내 재료의 정확한 사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-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-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
	전문가 활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문가 자문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의참석 사례비 - 본 지원사업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
	임대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PC 임대 ※ 자산취득 불가 • 신규인력 채용 시에 한하여 인정(채용 전후 1개월 이내) •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•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
간접비	일반 수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무용품 구입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필기용구,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• 인쇄비 및 유인비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각종 양식,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•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 - 현수막,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• 광고료 및 광고료 - TV·신문·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광고 및 광고료 • 전문가 활용비 <p>< 산정 및 정산 기준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• 전문가 자문료는 주관·참여 기업소속 인원 지급 불가 •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
	회의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각종 회의비 - 과제수행을 위한 타 기업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경비 • 회의록 필수 (참가자 전원 성명, 소속, 서명 필수/회의세부내용, 회의사진 필수) • 1식 30,000원 이내(1인 기준) ※ 온라인 회의 시 사용 불가 • 일시, 목적, 장소, 비용, 참석자 확인이 가능한 회의록 필수 • 수행기업 내부인원 간 회의비는 불인정 •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•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
	임대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이력 채용에 따른 PC 임대(자산취득 불가) • 신규인력 채용 시에 한하여 인정(채용 전후 1개월 이내) •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•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

※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(단독 수행)은 외주 용역비 사용 불가

- ② 지역 전략산업 홍보 콘텐츠 개발(컨소시엄 수행)

구분		지원내용
인건비	인건비 (현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 사업비의 25% 이상 신청기업 부담(총 사업비의 10% 이상 현금) ※ 인건비는 현물 계상만 가능(현금 계상 불가)하며, 총 사업비의 70% 이내에서 편성 • 인건비 계상방식 - 실 인건비 × 참여 기간(개월 수) × 참여율 (ex. 2,000,000원 × 8개월 × 40% = 6,400,000원) • 실 인건비 산정근거 - 기존인력: 최근 3개월 원천징수 영수부 근거 산정 (관련 자료제출 必)3개월 급여 평균의 30% 이상을 계상할 수 없음 - 신규인력: 기업 사규 및 취업규칙, 동일 직급 및 유사업무 인력 인건비 근거 산정(관련 자료제출 필수) - 협약 기간 개월 수 이내의 인건비만 산정 가능 - 통상임금만 계상하며, 유동적·비정기적 임금 계상 불가 - 복리 후생적 성격의 임금 계상 불가
직접비	재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콘텐츠 제작 및 완성(납품)을 위한 HW, SW 등의 완제품 구매 ※ 범용성 물품 및 사무기기 구매 불가 - 해당 사업수행에 있어 과제 완성에 필요한 재료의 구매 시 인정 - 계획서 내 재료의 정확한 사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-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-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
	외주 용역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수행 일부를 외부기업에 위탁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- 사운드, 그래픽, 번역 등 외부 위탁(외주 제작) 용역비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행계획서상 계획된 위탁사업 비용만 인정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
	임대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PC 임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자산취득 불가 신규인력 채용 시에 한하여 인정(채용 전후 1개월 이내)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
간접비	일반 수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무용품 구입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필기용구,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각종 양식,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수막,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광고료 및 광고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TV·신문·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광고 및 광고료 전문가 활용비 < 산정 및 정산 기준 >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전문가 자문료는 주관·참여 기업소속 인원 지급 불가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
	회의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각종 회의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수행을 위한 타 기업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경비 회의록 필수 (참가자 전원 성명, 소속, 서명 필수/회의세부내용, 회의사진 필수) 1식 30,000원 이내(1인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온라인 회의 시 사용 불가 일시, 목적, 장소, 비용, 참석자 확인이 가능한 회의록 필수 수행기업 내부인원 간 회의비는 불인정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

○ 기업 부담금

- 총 사업비의 25% 기업 부담(현금10%/현물15%)

※ 총 사업비의 10% 이상 현금 부담

※ 선정평가를 통하여 사업내용 및 성과물 등에 따라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

10%	20%	30%	40%	50%	60%	70%	80%	90%	100%		
지원금(75%)								현금(10%)		현물(15%)	
								기업부담금(25%)			
총 사업비(100%)											

03 신청자격

① 신청자격

- (주관기업)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공장이 평택에 소재하며, 업력 1년 이상,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(과제책임자) 주관기업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, 해당 분야 연구개발 수행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
- (참여기업)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으면서 사업화 및 확대화 가능성이 높은 독자적인 콘텐츠 기획 및 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
 - ※ 참여기업은 지역제한 없음

② 지원제외 대상

- (제외기업군) 대기업 및 중견기업, 도·소매 업종 등
- (중복과제) 신청 과제가 기(既)개발 된 경우 또는 기(既)지원된 내용과 중복이거나 유사한 경우
 - ※ 진흥원 또는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조사 실시
- (책임자소속) 공고일 현재 과제책임자가 신청기업의 소속이 아닌 경우
 - ※ 4대 보험 미가입 시, 소속기업 임직원 불인정
- (참여제한자) 기업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(참여제한) 대상이거나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·정산금·환수금·세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(허위사항)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
-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업, 대표, 과제책임자가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
 -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 상태거나 부도·화의·법정관리 중인 경우
 -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
 -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완전자본잠식, 부채비율 500% 이상 또는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’ 인 경우
-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
-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04 사업비 편성

① 사업비 편성

총사업비 (A+B+C)	지원금(A)	기업부담금		
		합계(B+C)	현금(B)	현물(C)
100%	75% 이내	25% 이상	10% 이상	15% 이상

○ 총 사업비 = 지원금 + 기업부담금

※ 부가세 제외

○ 기업부담금 = 현금 + 현물

※ 현금은 총 사업비의 10% 이상 책정 필수

< 총 사업비 편성 (예) >

구분	지원금(A)	기업부담금(B+C)			총 사업비 (A+B+C)
		합계(B+C)	현금(B)	현물(C)	
금액(천원)	25,000	8,333	3,333	4,999	33,333
금액(천원)	24,000	8,000	3,200	4,800	32,000
금액(천원)	23,000	7,667	3,066	4,601	30,667
비중	75%	25%	10%	15%	100%

②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

-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 변동·조정 가능
- 기업부담금에 해당하는 25% 중, 현금 매칭 10% 이상 필수
- 반드시 콘텐츠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만 집행
- 부가세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(공급가액만 사업비 집행 가능)
- 협약체결 시, 지원금 100%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 가입 필수
※ 보증기간은 사업기간 + 6개월
- 선정된 기업은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·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참여
※ 성과조사에 불성실한 경우, 추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사업비 부적정 집행, 협약기간 내 본사 관외 이전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 가능
- 주관기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 진흥원과 성과물에 대한 통상실시권 체결

05 선정기준

① 선정방법

- ① 서류검토 :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지원 자격, 누락서류 등 진흥원 자체 검토
- ② 현장점검 : 조직 및 시설, 사업운영 현황 등 점검을 위한 사업장 방문
※ 현장점검 이후 발표자료 제출 관련 별도 안내 예정
- ③ 선정평가 : 5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서류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를 기반으로 평가 진행
※ 단,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·변동될 수 있음

② 평가기준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기업현황 (20점)	• 기업 재무 및 대표자의 사업추진 의지	10
	• 참여인력, 인프라 등 사업 수행 여건	10
기술성 (30점)	• 활용 디지털 기술의 우수성·차별성 및 독창성	15
	• 콘텐츠 분야 선택의 적절성(특수분류체계상 12개 영역)	15
차별성 (30점)	• 결과물의 흥행성 및 시장성 등 후속연계 가능성	15
	• 제품 등 홍보를 위한 대중성 및 파급력	15
기대효과 (20점)	• 사회, 경제,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	10
	• 고용창출 및 매출성장, 관련 산업발전 기여도	10
합계		100

※ 위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③ 추진절차



※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06 신청 및 접수

- 교 부 처 : 평택산업진흥원 홈페이지
- 접수기간 : 2024. 3. 12.(화) ~ 4. 11.(목) 15:00 까지
- 신청방법 : 메일(스캔본) 및 우편(직인 날인) 접수
- 제 출 처
 - 우편 : (18014) 경기 평택시 고덕여염9길 37, 408호 (재)평택산업진흥원
기업지원팀 담당자 앞
 - 메일 : smjin@pipabiz.or.kr
 - ※ 메일제목 : [콘텐츠 개발 사업 신청_기업명]
 - ※ 파 일 명 : 1. 사업신청서_기업명
- 문 의 처 : 기업지원팀(070-8874-7110, 7114)
-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제출부수	제출형식	비고
1	• 사업신청서	• 원본 1부 • 사본 7부	• hwp(원본) • PDF(날인본)	서식1
2	• 사업계획서	• 원본 1부 • 사본 7부	• hwp(원본) • PDF(날인본)	서식2
3	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참여인력 전원)	• 원본 1부	• PDF(날인본)	서식3
4	• 청렴이행 서약서	• 원본 1부	• PDF(날인본)	서식4
5	• 사업자등록증 ※ 평택 소재 공장(연구소)인 경우, 각 등록증 제출	• 원본 1부	• PDF	
6	• 법인등기부등본 ※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	• 원본 1부	• PDF	
7	• 최근 3개년 재무제표	• 각 사본 1부	• PDF	해당시
8	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※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본	• 원본 1부	• PDF	국세청 정부24
9	• 4대 보험 가입자 명부	• 원본 1부	• PDF	
10	• 기타 증빙자료	• 원본 1부	• PDF	해당시
11	•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※ 외주용역비, 재료비 등	• 원본 1부	• PDF	해당시

※ 필요한 경우 평택 내 소재 기업 여부 확인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
 ※ 제출서류는 모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

07 유의사항

-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)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, 지원금 회수,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며, 제출된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사실을 진흥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, 이를 어길 경우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
- 본 공고문에 안내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범위 포함 신청 가능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, 진흥원의 수정 및 보완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
-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.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
- 선정된 기업은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·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참여
※ 성과조사에 불성실한 경우, 추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성과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 산정 및 후속조치 가능

< 평가등급 및 후속조치(안) >

구분		내용	후속조치
성공	우수 (80점 이상)	•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	• 지원금 잔액 반납 및 과제종료
	보통 (70점 이상)	• 부득이한 사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, 향후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	
실패	성실실패 (70점 미만)	•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, 목표 달성이 미흡한 경우	• 지원금 환수 조치 • 진흥원 사업 제한(3년)
	불성실실패 (50점 미만)	• 사업 수행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고 회계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	

-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